

---

# 2021년 4분기 예산 전용 보고

---

2022. 2. 10.

도시계획국

# 2021년 4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 보고

## 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예산전용 내역 : 총 3건 876,072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정책	예산과목				전용액		전용후 예산액
			단위	세부	통계목	예산현액	증	감	
1	도시 계획과	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	도시 발전 연구	도시·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1,816,800	-	563,281	1,263,619
					시설비 (401-01)	0	563,281	-	563,281
2	도시 계획과	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	도시 발전 연구	도시·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1,263,619	-	310,781	951,253
					시설비 (401-01)	563,281	310,781	-	874,062
3	도시 관리과	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	도시건축 공동 위원회 운영 등	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195,692	-	2,010	181,590
					기타보상금 (301-12)	8,640	2,010	-	9,750

## □ 전용사유

- 신속통합기획 신규대상지 현황조사 및 건축기획설계 용역추진 (874백만원)
  - 당초 '21년 예산편성 대비 대상지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사무관리비(소규모 용역비)로 집행하기 곤란함에 따라 시설비로 전용하여 기술용역 추진중
  - ※ 대상지: 신당(51,604㎡), 신정(44,083㎡), 궁동(50,659㎡), 미아(51,265㎡), 영등포구 일대(100,000㎡)
-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외부위원 조사활동비 소요액 증가 (2백만원)
  - 전년대비 공동위 2회, 수권소위 8회 증가에 따른 조사활동 횟수 및 참석자 증가